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67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문진석・박정현・이건태

윤종군 • 복기왕 • 장종태

박용갑 • 이정문 • 김문수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

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3항에 따른 운영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 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등의 건설기준)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 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이하"에너지 절약계획서" 라 한다)----<신 설> ②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에너지 절 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u><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
	<u>임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검토절차, 제3항에 따
	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
	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
	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u>⑥</u> (현행 제2항과 같음)